



# 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September 2021

WTO SPS 협정의 목적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부당한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02

주요 내용



03

'21. 8월 WTO SPS 통보 통계



04

'21. 8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I. WTO SPS 통보 및 현황 03

II. 주요 내용 04

WTO SPS 통보문

동물검역

- [ 유럽연합 ] 위생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4
- [ 칠레 ] 반려동물용 설치류목(目) 동물의 수입위생조건 발효 6

식물검역

- [ 뉴질랜드 ] 묘목의 수입검역기준 개정 8
- [ 대만 ] 식물, 식물성 산물, 수입품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검역요건 개정안 10
- [ 영국 ] 한국산 분재의 식물검역요건 개정 11
- [ 캐나다 ] 신선 고추 및 신선 토마토의 식물검역요건 3차 개정 12

식품안전

- [ 미국 ] 농약 3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안 13

WTO TBT 통보문

식물검역

- [ 필리핀 ] GMO 부기사항이 필요한 상품 목록의 개정 15

식품안전

- [ 미국 ] 유기농규정에 승인 및 금지된 성분 목록 개정안 16

III. '21. 8월 WTO SPS 통보 통계 17

IV. '21. 8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25



Contents

SPS info NEWS 집필진

검역정책과	연구위원 강신원 (유럽 지역)	농업통상과	연구위원 이소영 (서남아·아랍권 지역)
	연구위원 염윤아 (오세아니아 지역)	동아시아FTA과	연구위원 김현정 (중국어권 지역)
	연구위원 이근필 (서반어권 지역)	수출진흥과	연구위원 황기선 (북미 지역)
	연구위원 조은송 (아시아 지역)	식품산업정책과	연구위원 유요예 (아프리카 지역)
관련질의메일	wtoagri@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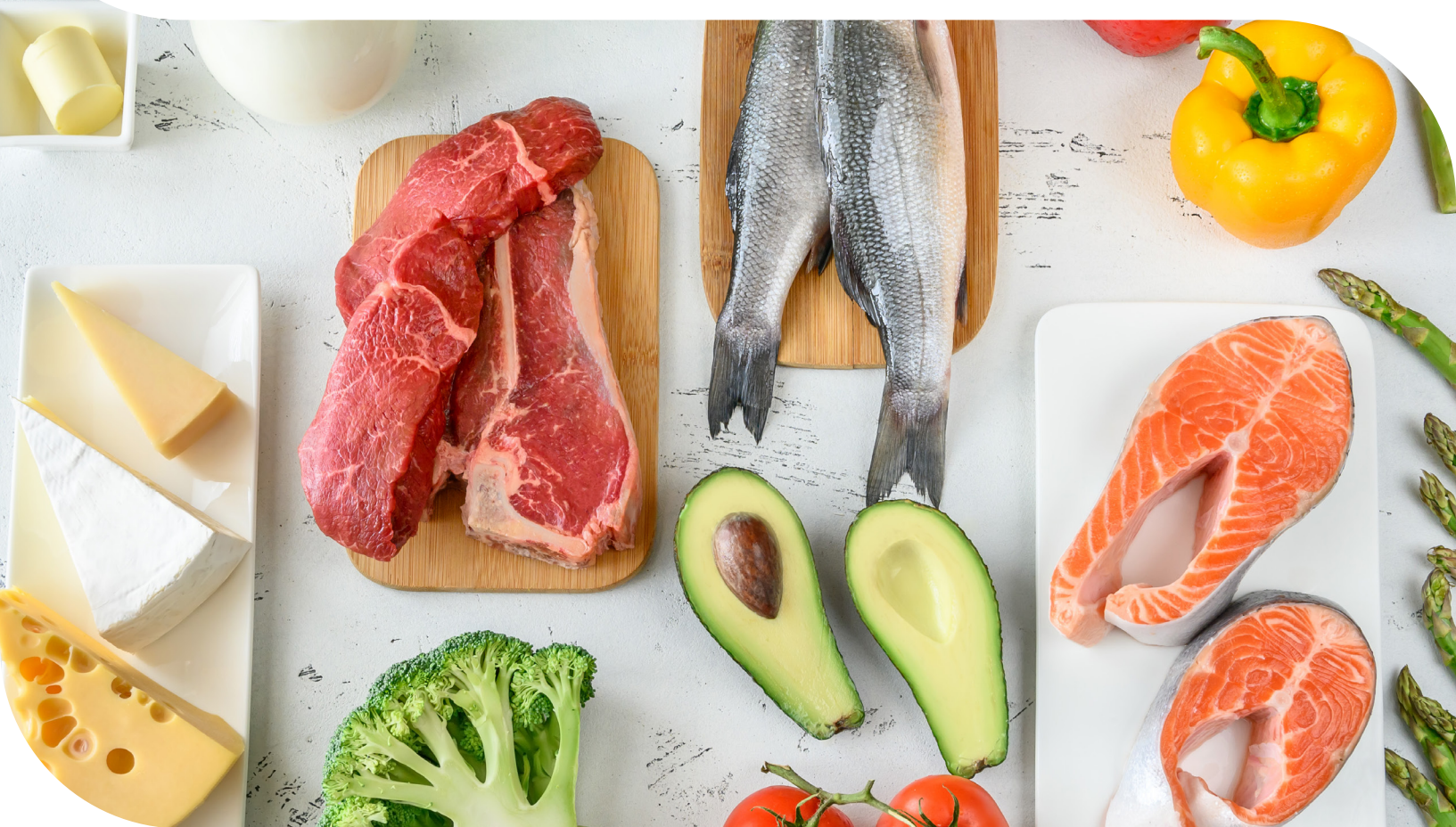
##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WTO SPS 협정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국가간 교역의 부당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PS 조치는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WTO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SPS 조치의 공표 후 발효까지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1. 8월 말 기준, WTO에 통보된 SPS 조치 총 130건을 목적 및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품안전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물보호(43건), 동물위생(39건),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의 건강보호(8건),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 보호(7건)순 이었습니다.

\* 하나의 WTO SPS 통보에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전체 통보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주요 내용

'21. 8월 기준, WTO SPS 통보문 및 WTO TBT 통보문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 하였습니다.

—  
WTO SPS 통보문

동물검역

### 01 [유럽연합]

위생증명서 유예기간 연장

(G/SPS/N/EU/503, '21.8.18.)

유럽연합 위원회에서는 동물위생법 개정(규정 제2016/429호)을 통한 전자위생증명 및 운영 플랫폼(TRACES NT) 개편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및 동물성 제품(식용)에 대한 동물위생증명서의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플랫폼 개편으로 신규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제3국산 해당 제품의 수입과 역내 운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통보문을 통해 기존의 유예기간인 '21.10.20일(21.8.21일자 직인까지 유효)을 '22.3.15일(22.1.15일자 직인까지 유효)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이 변경된 위생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별 위생증명서명	관련 규정
동물성 제품,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 및 식물종자에 관한 위생증명서	제2020/2235호
수생동물 및 수생동물 유래제품에 관한 위생증명서	제2020/2236호
육상동물 및 배아에 관한 위생증명서	제2021/403호
제3국산 살아있는 동물 및 배아, 동물성 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제2021/404호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EEC/21\\_5248\\_00\\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EEC/21_5248_00_e.pdf)

## 02 [ 칠레 ]

### 반려동물용 설치류목(目) 동물의 수입위생조건 발효

(G/SPS/N/CHL/670/Add.1, '21.8.2.)

칠레 농축산청(SAG)은 동물원용, 판매용 및 반려동물용으로 수입하는 설치류목(目)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의 발효를 공표 하였습니다.

이번 위생조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 위생규약 제8.14조를 준수하고 있으며, 수입 선적요건, 선적 전(pre-shipment)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통보문에 첨부된 전문은 스페인어로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내용
제1조. 조치의 목적	제1항 동물유래 전염병의 유입 방지 및 완화의 필요성
	제2항 설치류목 동물의 질병(광견병)에 대한 OIE 권고안과의 조화
	제3항 가축, 야생동물 및 외래동물 교역에 따른 광견병 확산 가능성
제2조. 반려동물의 정의	제1항 동물의 주인 또는 운송인과 동일한 수단으로 이동하는 동물
	제2항 반려동물 이동(운송) 서비스로 이동되는 동물
	제3항 외국 도착지에서 반려동물로 소유되는 동물
	제4항 자국에서 최소 30일간 주인과 함께 산 동물
	제5항 번식, 판매, 양도(소유권), 전시 또는 기타 영리활동을 목적하지 않는 동물
제3조. 원산지 요건	제1항 해당 동물은 OIE 회원국에서 유래할 것
	제2항 해당 동물은 광견병이 법정전염병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유래할 것
	제3항 해당 동물은 해당 종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거나 최소 6개월간 살았을 것
	제4항 선적 직전 90일간 야토병(tularemia)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zone)에서 유래할 것
제4조. 원산지 시설요건	제1항 수의사가 감독하는 시설(반려동물 제외)
	제2항 해당 동물은 선적 전 6개월간 동물원, 전시장 또는 상업시설에서 생활해야 함. 해당 시설은 선적 전, 최소 최근 12개월간 전염병 이 발생하지 않은 곳으로 광견병 예찰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갖춘 곳일 것
	제3항 반려동물 설치류의 경우, 선적 전 10일 이내에 민간 수의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동반해야 하며 증명서에는 광견병에 관한 임상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이 기재되어야 함
제5조. 선적 전 격리	제1항 해당 동물은 선적 전, 검역당국이 검역을 위해 허가한 장소에서 최소 15일의 검역 또는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반려동물은 선적 전, 15일간 공식통제 하의 격리장소에서 보호됨
	제2항 해당 동물은 수의사에게 임상 검사를 받으며, 전염병 및 기생충에 대한 임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야 함
	제3항 관련 검역당국에 허가 및 효력이 입증된 항생제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치료를 받으며, 살모넬라(salmonellosis)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함
	제4항 관련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고 효력이 입증된 제품으로 원충에 대한 예방처치를 받아야 함
	제5항 관련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고 효력이 입증된 제품으로 내외부 처치를 해야 하며, 칠레 선적 10일 전 구충제 처치를 할 것
	제6항 제5.3, 5.4, 5.5조에서 기재한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저해하지 않으며 동물에 처리한 약제명, 상품명, 투여량, 투여일자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제7항 칠레에 수출되는 동물은 다른 종 또는 같은 동물종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함

구분	세부내용
제6조. 선적 요건	제1항 원산국 관련 검역당국이 선적 시 발급한 공식위생증명서 (원산국 언어 및 스페인어)가 첨부되어야 함. 증명서에는 수입업체명, 동물등록번호(ID) 및 마릿수, 도착지 시설 정보 등 세부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제2항 선적 시점, 해당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하며, 외부 기생충 검사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지 않아야 함
	제3항 운송 중 칠레에서 요구하는 동물복지 및 위생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다른 동물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함
	제4항 해당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증명서가 있어야 함
	제5항 농축산청(SAG) 재생천연자원부가 발급한 야생 외래동물종의 승인 관련 결의안을 제출해야 함
제7조. 수입요건	제1항 농축산청(SAG)이 허가한 시설에서 최소 15일의 격리된 동물이어야 함
제8조. 기타	기니피그의 수입요건을 제정한 결의안 제2875/2007호를 철회함

###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HL/21\\_2140\\_00\\_s.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HL/21_2140_00_s.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HL/21\\_2140\\_01\\_s.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HL/21_2140_01_s.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HL/21\\_5019\\_00\\_s.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HL/21_5019_00_s.pdf)

## 01 [뉴질랜드]

### 묘목의 수입검역기준 개정

(G/SPS/N/NZL/654, '21.8.16.)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포도속(*Vitis*) 묘목 목록에 *Vitis cordifolia* 종을 추가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Vitis cordifolia* 종에 관한 위험관리조치는 묘목의 수입검역기준((155.02.06) 내 포도속의 다른 종에 요구되는 내용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뉴질랜드로 수입가능한 포도속 묘목 종류 : 삽수, 조직배양체
2. 포도속 검사 대상 병해충 : 부록 참고
3. 1차산업부에서 승인한 시설로부터의 포도속 삽수 및 조직배양체 수입요건
  - 수입 시 필요 서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
  - 식물검역증명서 요건
    - 1)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국은 공식 절차에 따라 병해충 검사를 진행하고, 규제 병해충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 2) 삽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7일 이내에 살충제 처리 요건(제2.2.1.6절 참고)에 따라 규제 곤충 및 응애를 처리하여야 함
    - 3) 삽수는 곤충 유입이 차단된 곳 또는 포장에서 재배된 모본이어야 함
    - 4) 뉴질랜드 1차산업부와 승인된 시설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된 규제 병해충이 없는 곳에서 보관/검사/분류되어야 함
    - 5) 승인된 시설에서 검사 후 감염/재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된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함
  - 격리재배 : 모든 묘목은 격리재배시설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규제 병해충에 관한 검사 및 처리가 이루어짐
    - 1) 모든 포도속 묘목은 허가 받은 온실 또는 조직배양 시설로 수입되어야 함
    - 2) 곤충 유입이 차단된 곳에서 재배된 모본의 삽수 및 조직배양체는 최소 6개월간 격리되어야 함
    - 3) 포장에서 재배된 모본의 삽수는 최소 16개월간 격리되어야 함
4. 미승인된 시설로부터의 포도속 삽수 및 조직배양체 수입요건
  - 수입 시 필요 서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



- 식물검역증명서 요건

1)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국은 공식 절차에 따라 병해충 검사를 진행하고, 규제 병해충을 육규제 병해충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2) 삽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7일 이내에 살충제 처리 요건(제2.2.1.6절 참고)에 따라 규제 곤충 및 응애를 처리하여야 함

3) 승인된 시설에서 검사 후 감염/재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된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함

- 격리재배 : 모든 묘목은 격리재배시설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규제 병해충에 관한 검사 및 처리가 이루어짐

1) 모든 포도속 묘목은 허가 받은 온실로 수입되어야 함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NZL/21\\_5214\\_00\\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NZL/21_5214_00_e.pdf)

## 02 [대만]

### 식물, 식물성 산물, 수입품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 수입검역요건 개정안 공표

(G/SPS/N/TPKM/571, '21.8.26.)

대만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병해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식물, 식물성 산물, 수입품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검역요건 개정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트B 제1항의 제37-39호에 언급된 *Pseudomonas syringae syringae*, 포도피어슨병균(*Xylella fastidiosa*), *Arabis mosaic virus* 대상 규제 식물에 대한 감염지역이 부분적으로 개정됨
- 바이러스 3종(*Fig mosaic virus*,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Orchid fleck virus*) 감염지역산 기주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은 개정안 제50-52호에 등재됨
- 파트B 제10항에서 곤충 2종(*Contarinia maculipennis*, *Pseudaulacaspis dendrobii*), 잡초 2종(핑크물리(*Muhlenbergia capillaris*), 루비물리(*M. reverchonii*))를 추가함. 또한 바이러스 1종(*Impatiens necrotic spot virus*)은 삭제되었으며, 국화화부병균(*Didymella ligulicola*)은 *Stagonosporopsis chrysanthemi*(무성생식: *Didymella ligulicola*)으로 변경됨

또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제15호를 준수하는 신규 목재포장재 처리법 2종 및 동 처리법에 대한 라벨링 예시를 “수입품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를 위한 검역요건”에 추가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은 '21.10.25일까지입니다.

####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TPKM/21\\_5420\\_00\\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TPKM/21_5420_00_e.pdf)

한국산 분재의 식물검역요건 개정

(G/SPS/N/GBR/7/Add.2, '21.8.18.)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한국산 분재의 식물검역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21.4.7일에는 통보문 G/SPS/N/GBR/7을 통해 한국산 분재 관련 관리병해충 목록에 해충(*Agilus bilineatus*)과 미끈이하늘소 (*Neocerambyx raddei*)가 추가되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한국산 분재 수입관련 조치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물검역요건을 개정하는 중이며, 한국산 향나무속 식물(*Juniperus L.*)의 영국 내 수입 기간을 매년 11.1일부터 3.31일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21.10.21일 채택될 예정이며, 전문 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국산으로 영국 내 수입 시 특수 요건을 적용받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품목 목록〉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품목	원산지	특수 요건
<p>본래 또는 인위적으로 왜소화된(dwarfed) 편백속(<i>Chamaecyparis Spach.</i>), 향나무속(<i>Juniperus L.</i>), 또는 소나무속(<i>Pinus L.</i>) 식물</p>	<p>대한민국</p>	<p>해당 식물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함.</p> <p>...(중략)...</p> <p>(c) 향나무속(<i>Juniperus L.</i>)의 경우,                      (i) 수출 전 2년 동안 본래 또는 인위적으로 왜소화된(dwarfed) 식물 대상의 종묘장에서 재배된 향나무속(<i>Juniperus L.</i>) 및 명자나무속(<i>Chaenomeles Lindl.</i>), 산사나무속(<i>Crataegus L.</i>), 털모과(<i>Cydonia Mill.</i>), 사과나무속(<i>Malus Mill.</i>), <i>Photinia Ldl.</i>, 배나무속(<i>Pyrus L.</i>) 식물임                      (ii) (i)에서 언급된 식물과 직접 인접한 지역은 1년에 6회 이상 공식적으로 검사받고, 다음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소나무재선충(<i>Bursaphelenchus xylophilus</i>), 소나무 잎마름병(<i>Pseudocercospora pini-densiflorae</i>), 소나무 잎녹병(<i>Coleosporium phellodendri</i>, <i>Coleosporium asterum</i>), <i>Coleosporium eupatorii</i>, 소나무 흑병(<i>Cronartium quercuum</i>), 솔나방(<i>Dendrolimus spectabilis</i>), <i>Monochamus spp.</i>, 왜콩퐁앵이(<i>Popillia japonica</i>), 영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기타 유해 생물</p> <p>(d) 편백속(<i>Chamaecyparis Spach.</i>)의 경우,                      (i) 본래 또는 인위적으로 왜소화된(dwarfed) 식물 대상의 종묘장에서 재배된 편백속(<i>Chamaecyparis Spach.</i>) 및 소나무속(<i>Pinus L.</i>) 식물임                      (ii) (i)에서 언급된 식물과 직접 인접한 지역은 1년에 6회 이상 공식적으로 검사받고, 다음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왜콩퐁앵이(<i>Popillia japonica</i>), 영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기타 유해 생물</p> <p>(e) 소나무속(<i>Pinus L.</i>)의 경우,                      (i) 본래 또는 인위적으로 왜소화된(dwarfed) 식물 대상의 종묘장에서 재배된 소나무속(<i>Pinus L.</i>) 및 편백속(<i>Chamaecyparis Spach.</i>) 식물임                      (ii) (i)에서 언급된 식물과 직접 인접한 지역은 1년에 6회 이상 공식적으로 검사받고, 다음이 없어야* 함: 소나무재선충(<i>Bursaphelenchus xylophilus</i>), 소나무 잎마름병(<i>Pseudocercospora pini-densiflorae</i>), 소나무 잎녹병(<i>Coleosporium phellodendri</i>, <i>Coleosporium asterum</i>), <i>Coleosporium eupatorii</i>, 소나무 흑병(<i>Cronartium quercuum</i>), 솔나방(<i>Dendrolimus spectabilis</i>), <i>Monochamus spp.</i>, 왜콩퐁앵이(<i>Popillia japonica</i>), 솔잎혹파리(<i>Thecodiplosis japonensis</i>), 영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기타 유해 생물</p> <p>...(중략)...</p> <p>* 종묘장 이름은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에 기재되어야 함.                      ** 감염된 식물은 제거되고 남은 식물은 효과적으로 처리되어야 함.</p> <p>연간 종묘장 등록 목록은 매년 늦어도 3월 1일까지 영국의 국립식물보호기관(NPPO)에 제출되어야 함. 각 종묘장에서 재배되는 식물의 수가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식물은 규정된 요건 하에서 영국에 수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영국에 수출될 식물의 총개수는 사전에 영국 NPPO가 승인하였던 양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승인량은 검역 시설의 수용 한계에 따름.</p> <p><b>향나무속 식물(<i>Juniperus L.</i>)의 경우, 영국 내 수입 시기는 1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여야 함.</b></p> <p>제(c)항~(e)항에 따른 검사에서 우려했던 유해 생물이 발견될 때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요청될 시 영국 NPPO에 제출되어야 함. 제(c)항~(e)항에 명시된 유해 생물이 발견되면 대영국 식물 수출 종묘장 자격이 박탈됨. 영국 NPPO는 이에 대하여 즉시 보고 받아야 함. 이런 경우 등록은 차기 연도가 되어야 갱신될 수 있음.</p> <p>...(중략)...</p>

## 04 [캐나다]

### 신선 고추 및 신선 토마토의 식물검역요건 3차 개정

(G/SPS/N/CAN/927/Rev.1, '21.8.5.)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선 고추 및 신선 토마토의 식물검역요건(D-10-01)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스템 접근법(System approach)\* 에 따른 한국산 신선 토마토 수입 허가(기존에는 신선 고추만 수입 허가되었음)

\* 시스템 접근법의 주요 내용

- 신선 토마토는 상업적 화물(commercial consignments)<sup>1)</sup>으로만 수입해야 함
- 신선 토마토는 수입 시 줄기, 꽃받침 등이 제거되어야 함
- 토마토는 원산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에 등록된 온실 등과 같은 병해충 방제 시설에서 재배되어야 함
- 병해충 방제 시설에는 이중자동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모든 환기구 또는 틈은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1.6mm 이하의 방충망을 덧대야 함

2. 식물검역요건 개정

- 병해충 비발생 지역 : CFIA가 인정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 시스템 접근법 : CFIA가 승인한 시스템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이 진행되어야 함
- 방제 방법 : 식물검역증명서의 '처리' 항목에 상세히 기술해야 함

3. 신선 고추 및 토마토의 캐나다 수입이 승인된 국가 목록 개정

4. 문구의 정확성을 위한 자구 수정

CFIA는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그동안 개정 전/후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모두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상업적 배송은 검역관이 수량, 포장 유형, 생산자 및 포장 시설 표시, 도매상 또는 소매상과 위탁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매 또는 유통(distribution)을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함

####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AN/21\\_5056\\_00\\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AN/21_5056_00_e.pdf)

# WTO SPS 통보문

## 식품안전

### 01 [미국]

#### 농약 3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안

(G/SPS/N/USA/3260 외 2건, '21.8.11.)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여러 종류 농산물 내부 또는 표면의 농약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제타-사이퍼 메트린(Zeta-Cypermethrin) 및 에마멕틴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의 잔류허용기준(MRL) 제·개정안을 통보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과 동일 ■ 국내기준 없음

문서번호	주요 제·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USA/3260	<p>■ 옥수수 낱알 0.015ppm(옥수수 국내기준 0.05ppm), 땅콩가루 0.01ppm(땅콩 국내기준 0.05ppm)</p> <p>■ 옥수수대 10ppm, 조사료용 옥수수 3.0ppm, 옥수수 0.7ppm, 옥수수 도정부산물 0.3ppm, 옥수수글루텐밀 0.05ppm, 조사료용 팝콘옥수수 3.0ppm, 팝콘옥수수 낱알 0.01ppm, 팝콘옥수수대 15ppm, 단옥수수 통조림 부산물 0.03ppm, 단옥수수 열매 0.01ppm, 조사료용 단옥수수 15ppm, 단옥수수대 15ppm(국내기준 옥수수 0.05ppm)</p> <p>■ 아보카도 0.15ppm, 케인베리 하위그룹 13-07A 3.0ppm, 곡물 낱알 0.7ppm, 정제 옥수수유 0.02ppm, 땅콩 견초 20ppm</p>	땅콩 (피넛버터 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등	02/09/2021	추후결정
G/SPS/N/USA/3261	<p>■ 돼지지방 0.1ppm(돼지지방 국내기준 0.2ppm), 감귤류 건조 펄프 1.8ppm, 그룹 10-10 감귤류 과실 0.35ppm(감귤류 국내기준 2.0ppm); 망고 0.7ppm(망고 국내기준 2.0ppm); 아보카도, 수수, 작물하위그룹 10-10C 자몽, 파파야 0.5ppm(아보카도, 자몽, 파파야 국내기준 2.0ppm; 수수 국내기준 1.0ppm); 작물하위그룹 10-10B 레몬/라임, 작물하위그룹 10-10A 오렌지 0.3ppm(레몬, 오렌지 국내기준 2.0ppm); 작물하위그룹 20A 유채 씨, 그룹 9 박과 채소, 밀 0.2ppm(유채 국내기준 6.0ppm; 멜론, 수박 국내기준 2.0ppm; 호박 국내기준 5.0ppm; 밀 국내기준 2.0ppm)</p> <p>■ 4-16B 십자화과 엽채류 14ppm(무 잎 국내기준 5.0ppm; 배추 국내기준 2.0ppm); 작물하위그룹 22B 잎자루채소 10ppm(셀러리 국내기준 5.0ppm); 신선 바질잎 7ppm(허브류(생) 국내기준 0.05ppm); 그룹 11-10 이과류 과실; 작물하위그룹 13-07F 퍼지키위를 제외한 덩굴성 소과류; 그룹 12-12 핵과류 과실; 콜라비; 그룹 5-16 십자화과 채소 2ppm(사과 국내기준 1.0ppm; 배 국내기준 0.5ppm; 포도 국내기준 0.5ppm; 복숭아, 자두 국내기준 1.0ppm; 콜라비 국내기준 0.5ppm; 브로콜리 국내기준 0.3ppm); 쌀, 야생벼 1.5ppm(쌀 국내기준 1.0ppm); 식용과피 두류; 식용과피 완두류 0.7ppm(대두, 두류 국내기준 0.05ppm); 정선된 두류, 정선된 완두류, 정선된 대두, 작물하위그룹 3-07A 양파, 사탕무를 제외한 그룹 1 구경 및 과경 채소 0.1ppm(대두, 두류, 양파, 감자, 고구마 국내기준 0.05ppm)</p>	감귤, 사과, 배, 멜론 종자, 호박(견조) 등	-	04/08/2021

문서번호	주요 제·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USA/3261	Zeta-Cypermethrin	<p>■ 그룹 18 풀과가 아닌 동물 사료 건조, 건조 바질 잎 40ppm; 그룹 17 풀과 건조 35ppm; 알팔파 건조, 옥수수 그루터기, 팜콘옥수수 그루터기, 보리 짚, 메밀 짚, 귀리 짚, 퀴노아 짚, 호밀 짚 20ppm; 알팔파 조사료, 단옥수수 조사료, 단옥수수 그루터기 15ppm; 줄기상추, 신선 회향 잎과 줄기, 흡입된 곡물 분획, 그룹 17 풀과 조사료, 10ppm; 옥수수 조사료 9ppm; 그룹 18 풀과가 아닌 동물 사료 조사료 8ppm; 테프 짚, 밀 짚 7ppm; 아몬드 겨, 보리 건조, 메밀 건조, 귀리 건조, 퀴노아 건조, 쌀 겨, 호밀 건조, 테프 건조, 밀 건조 6ppm; 수수 그루터기 5ppm; 감귤류 오일 4ppm; 보리 낱알, 메밀 낱알, 귀리 낱알, 작물하위그룹 3-07B 파, 퀴노아 낱알, 호밀 낱알, 테프 조사료, 밀 조사료 3ppm; 유지방 2.5ppm; 작물하위그룹 13-07B 블루베리, 작물하위그룹 13-07A 케인베리 0.8ppm; 소/염소/말/양 지방 1ppm; 아티초크, 사탕수수 0.6ppm; 알팔파 씨, 카니스텔, 작물하위그룹 20C 목화씨, 사포딜라, 블랙 사포테, 마메이 사포테, 스타애플, 해바라기 정제유 0.5ppm; 피마자 정제유, 오구나무 정제유, 유호비아 정제유, 달맞이꽃 정제유, 호호바 정제유, 니거씨 정제유, 로즈힙 정제유, 스토 케시아 정제유, 탈로우드 정제유, 차유식물 정제유, 베르노니아 정제유 0.4ppm; 테프 씨 0.3ppm; 소/염소/말/양고기 0.2ppm; 수수 조사료 0.1ppm; 소/염소/말/양 육류부산물, 돼지고기, 가금육, 두류 건조종자, 완두류 건조종자, 사탕무 뿌리 0.05ppm</p> <p>■ 달걀 0.05ppm, 작물하위그룹 4-16A 엽채류 10ppm(상추 국내기준 10ppm), 그룹 8-10 과실채소 0.2ppm(가지 국내기준 0.2ppm); 땅콩, 옥수수 국내기준 0.05ppm</p>	감귤, 사과, 배, 멜론 종자, 호박(건조) 등	-	04/08/2021
G/SPS/N/USA/3266	Emamectin benzoate	<p>■ 대두 종자 0.01ppm (대두 국내기준 0.05ppm)</p>	대두 기타 (기타), 대두의 분과 조분 등	-	13/08/2021

관련 사이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8-03/html/2021-16333.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8-04/html/2021-16189.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8-13/html/2021-17184.htm>

# WTO TBT 통보문

## 식물검역

### 01 [ 필리핀 ]

#### GMO 부기사항이 필요한 상품 목록의 개정

(G/SPS/N/PHL/63/Add.1(21.8.13.), G/TBT/N/PHL/260(21.8.12.), G/TBT/N/PHL/260/Add.1(21.8.27.))

필리핀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수입 및 환경 방출에 관한 규칙 및 규정(행정명령 제2002-8호<sup>1)</sup>)”에 따라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내 유전자변형작물(GMO)에 관한 부기사항이 필요한 품목의 목록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품목은 아래의 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WTO SPS 위원회로도 통보되었으며, 메모랜덤(Memorandum) 서명일(추후 예정)로부터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표 1. 식물검역증명서 내 GMO에 관한 부기사항을 요구하는 품목의 목록

작물명
애기겨이삭, 가지, 감자, 피망, 담배, 대두, 동부콩, 두류, 멜론, 면화, 밀(듀럼밀 포함), 사과, 사시나무속(Populus) 식물, 사탕무/비트, 사탕수수, 쌀, 아마, 알팔파, 옥수수, 유채씨, 유칼립투스, 잇꽃, 자두, 장미, 치커리, 카네이션, 카놀라, 토마토, 파인애플, 파파야, 페튜니아, 포자(Spores), 호박

1) 필리핀 농무부 행정명령 제2002-8호에 포함되는 품목: 1. 식물 병해충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유해 집초 유입을 위한 매개체로 필리핀표준국(BPS)이 분류한 모든 속 또는 분류군에 속한 공여체 (Donor), 기주 생물체, 벡터(vector) 또는 매개체 중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변형 또는 생산된 모든 식물; 또는 2. 이용 가능한 과학 및 기술 정보에 근거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변경 또는 생산된 모든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

####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PHL/21\\_5186\\_00\\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PHL/21_5186_00_e.pdf) (메모랜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PHL/21\\_5433\\_00\\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PHL/21_5433_00_e.pdf) (메모랜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PHL/21\\_5186\\_01\\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PHL/21_5186_01_e.pdf) (품목의 목록)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PHL/21\\_5433\\_01\\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PHL/21_5433_01_e.pdf) (품목의 목록)

01 [미국]

유기농규정에 승인 및 금지된 성분 목록 개정안

(G/TBT/N/USA/1768, '21.8.25.)

미국 농무부(USDA) 농업마케팅지원청(AMS)은 미국 유기농 제품 규정 내 '승인 및 금지 성분 목록(국가목록)\*' 개정안을 통보하였습니다.

\* 국가유기농표준위원회(NOSB)는 5년마다 국가목록 내 성분의 갱신을 검토하며, 농업마케팅지원청에서는 유기농표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개정된 국가목록을 발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유기농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과정에 사용이 승인된 아래의 합성 또는 천연 성분을 금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 현재 유기농 농·축산물 생산에 허용되는 아래의 성분을 삭제함

1. Sucrose Octanoate Esters(유기농 농산물 생산)
2. Vitamin B1(유기농 농산물 생산)
3. Oxytocin(유기농 축산물 생산)
4. Procaine(유기농 축산물 생산)
5. Sucrose Octanoate Esters(유기농 축산물 생산)

- 현재 유기농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아래의 비유기농 성분을 삭제함

Alginic acid, Colors (black currant juice color, blueberry juice color, carrot juice color, cherry juice color, grape juice color, paprika color, pumpkin juice color, turmeric extract color), Kelp, Konjac flour, Sweet potato starch, Turkish bay leaves, Whey protein concentrate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21.10.25일까지 Federal eRulemaking Portal(<https://www.regulations.gov/>)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USA/21\\_5386\\_00\\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USA/21_5386_00_e.pdf)





## '21. 8월 WTO SPS 통보 통계

'21. 8월 기준, WTO SPS 통보 총 130건을 국가, 주요내용,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검역(40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뉴질랜드	소 정액 및 수정란의 위생조건 채택 및 유효기간 적용 - 공란우(donor)요건, 통관요건, 질병 비발생요건 등	모든 교역국	소 정액 및 수정란	동물위생;	G/SPS/N/ NZL/645/ Add.1
2	대한민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수산물 수입 시, 전자위생증명서 제출 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수산물	식품안전;	G/SPS/N/ KOR/735
3	러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도미니카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도미니카 공화국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 제품	동물위생;	G/SPS/N/ RUS/235
4	러시아	가성우역 발생에 따른 이스라엘산 살아있는 우제류 및 그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이스라엘	축산물 (우제류)	동물위생;	G/SPS/N/ RUS/236
5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토고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토고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RUS/237
6	러시아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캄보디아 및 라오스산 소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캄보디아, 라오스	축산물(소)	동물위생;	G/SPS/N/ RUS/238
7	러시아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네팔산 우제류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네팔	축산물 (우제류)	동물위생;	G/SPS/N/ RUS/239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8	모로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네덜란드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해제	네덜란드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MAR/70/ Add.1
9	바르바도스	동물복지 및 공중수의보건법 개정(안) 제정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위생;	G/SPS/N/ BRB/6
10	브라질	동물성 제품의 수입을 위한 사전 수입승인, 재검역, 특별규제 절차 개정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BRA/1452/ Add.1
11	브라질	포획조류(야생 및 관상용)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모든 교역국	축산물 (조류)	동물위생;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BRA/1964
12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덴마크 남쪽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 제정	덴마크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 ARE/216/ Add.3
13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아일랜드산 가금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해제(8월 2일)	아일랜드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ARE/224/ Add.1
14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슬로바키아산 가금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해제(8월 2일)	슬로바키아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ARE/231/ Add.2
15	유럽연합	동물, 배아제품, 동물유래 제품의 수입위생증명서 규정 개정 - 1/15일 이전에 서명된 상품의 경우, 수입을 허용함(22.3.15일까지)	모든 교역국	동물 및 동물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EU/503
16	칠레	반려동물용 설치류 목 동물의 수입위생조건 발효(7월 29일)	모든 교역국	동물 (설치류)	동물위생;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CHL/670/Add.1
17	칠레	우제류(소, 말, 염소, 돼지)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위생;	G/SPS/N/ CHL/689
18	칠레	상업 및 전시목적의 너구리과 및 족제비과 동물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모든 교역국	너구리 및 족제비	동물위생;	G/SPS/N/ CHL/668/ Add.1
19	칠레	박제동물(우제류)의 수입위생조건 발효	모든 교역국	박제동물	동물위생;	G/SPS/N/ CHL/674/ Add.1
20	카자흐스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리투아니아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	리투아니아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KAZ/93
21	캐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잠재발생국산 사료 선정을 위한 신규 수입조건 시행 - 열처리 및 보관시간에 관한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사료	동물위생;	G/SPS/N/ CAN/1244/ Add.13
22	콜롬비아	반려동물용 개, 고양이의 신규 수출입위생조건 의견수렴 공고(10월 30일까지)	모든 교역국	반려동물 (개, 고양이)	동물위생;	G/SPS/N/ COL/281/ Add.3
23	콜롬비아	비소가 포함된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제의 사용금지 공고	모든 교역국	사료	동물위생;	G/SPS/N/ COL/324/ Add.1
24	콜롬비아	미용 및 세척목적의 동물 제품의 등록 및 요건의 의견수렴 공고	모든 교역국	동물제품	동물위생;	G/SPS/N/ COL/332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25	콜롬비아	동물보건 및 위생목적의 수의용 진단키트, 생물학적 제제의 등록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동물용 의약품	동물위생;	G/SPS/N/ COL/333
26	콜롬비아	농업용 생물농약의 제조 및 등록 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생물농약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 COL/334
27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양고기(자육 및 절단육)의 등급별 기준 (프라임, 초이스, 스탠다드 등)	모든 교역국	축산물 (양고기)	식품안전;	G/SPS/N/ TZA/144
28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돈육(등급, 품질, 샘플링 등)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돈육)	식품안전;	G/SPS/N/ TZA/145
29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발생에 따른 프랑스 일부 지역(Gironde, Lot-et-Garonne 및 Gers)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90일)	프랑스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0/ Corr.1
30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라오스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연장(90일)	라오스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2
31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발생에 따른 영국 일부 지역(Fife)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90일)	영국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3
32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발생에 따른 네덜란드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90일)	네덜란드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4
33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H5N8) 발생에 따른 남아공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 금지 조치(9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5
34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발생에 따른 독일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90일)	독일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6
35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90일)	인도네시아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7
36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 H5N1) 발생에 따른 베트남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90일)	베트남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8
37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발생에 따른 덴마크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90일)	덴마크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29
38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발생에 따른 영국 일부 지역(Cheshire, Frodsham)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90일)	영국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THA/430
39	페루	호주산 쇠고기 및 식용 부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승인	호주	축산물	동물위생;	G/SPS/N/ PER/944
40	필리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네덜란드산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조치 해제	네덜란드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 PHL/487/ Add.2

## 식물검역 (40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뉴질랜드	썩덩나무노린재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검역 조치 공고 - 수입 차량, 기계 및 부품에 적용	모든 교역국	수입화물	식물보호;	G/SPS/N/ NZL/653
2	뉴질랜드	수입허용 식물(묘목) 목록 개정 - 포도( <i>Vitis cordifolia</i> ) 묘목 추가	모든 교역국	묘목(포도)	식물보호;	G/SPS/N/ NZL/654
3	뉴질랜드	사료, 가공용 곡물 및 종자의 수입요건 개정 - 수입허가서 미제출 목록 공고 (카라니 그라스, 잇꽃, 이태리 밀리트 종자)	모든 교역국	식물 (곡물 및 종자)	식물보호;	G/SPS/N/ NZL/655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4	대만	식물검역대상품목의 수입승인 개정(안) 발효	모든 교역국	식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TPKM/537/ Add.1
5	대만	미국 신선 인삼( <i>Panax quinquefolius</i> L.)의 수입검역요건 발효	미국	식물(인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TPKM/557/ Add.1
6	대만	실험, 연구 및 전사용 식물의 수입허용 요건 발효	모든 교역국	식물검역대상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TPKM/566/ Add.1
7	대만	식물·식물성 산물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및 목재포장재의 처리법 표시사항 추가 - 규제병해충 목록 변경 및 ISPM15(목재포장재) 준수를 위한 표시사항 추가	모든 교역국	식물 (목재포장재)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TPKM/571
8	대만	규제잡초목록 개정 - <i>Muhlenbergia capillaris</i> (핑크물리) 및 <i>Muhlenbergia reverchonii</i> (루비물리) 추가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 TPKM/572
9	러시아	브라질산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 조치 해제	브라질, 인도, 말라위, 남아공	담배류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RUS/234/ Add.3
10	멕시코	네덜란드산 꽃상추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종료	네덜란드	꽃상추 종자	식품안전;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MEX/391/ Add.1
11	미국	호주산 신선 감귤류 과실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 수출허가 생산지 목록 확대	호주	식물 (감귤류)	식물보호;	G/SPS/N/ USA/3263
12	바르바도스	식물보호법(안) 제정	모든 교역국	식물	식물보호;	G/SPS/N/ BRB/8
13	브라질	규제비검역병해충 통제지역 지정 공고 - <i>Moniliophthora roreri</i> (빛자루병과)에 대한 Acre 주(州) 지정	모든 교역국	병해충	식물보호;	G/SPS/N/ BRA/1961
14	브라질	빛자루병과 병해충( <i>Moniliophthora roreri</i> )의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검역조치 제정	모든 교역국	식물(병해충)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BRA/1962
15	브라질	화훼류 칼리브라코아( <i>Calibrachoa</i> spp.) 절화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식물 (칼리브라코아)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BRA/1963
16	스위스	식물검역제품의 시판조건 제정 - 사용 허가된 활성물질 목록 개정	모든 교역국	식물검역대상	식품안전;	G/SPS/N/ CHE/82/ Add.4
17	에콰도르	미국산 재식용 조직배양( <i>in vitro</i> ) 블루베리의 수입검역요건 발효	미국	식물 (블루베리)	식품안전;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ECU/257/ Add.1
18	영국	한국산 분재의 식물검역요건 개정 - 일부 해충( <i>Agilus bilineatus</i> , <i>Neocerambyx raddei</i> ) 조치 도입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대만, 터키, 캐나다, 미국, 베트남	식물(분재)	식물보호;	G/SPS/N/ GBR/7/Add.2
19	인도	식물검역규정(안) 의견수렴 공고 - 탄자니아산 아보카도의 수입 조항 완화	탄자니아	식물 (아보카도)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IND/265
20	일본	감자갈썩병 방지를 위한 긴급검역조치 제정 - 부기사항에 감자갈썩병(PSTVd) 비발생 증명사항 추가	카자흐스탄, 케냐, 파키스탄, 우간다	식물(감자)	식물보호;	G/SPS/N/ JPN/864
21	칠레	브라질산 신선 멜론 및 수박의 수입검역요건 잠정조치 제정 - 목록승인에 관함(pre-listing)	브라질	수박 및 멜론	식물보호;	G/SPS/N/ CHL/686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22	칠레	신선 바나나( <i>Musa spp.</i> ) 과실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바나나	식물보호;	G/SPS/N/ CHL/687
23	칠레	아르헨티나산 피칸(Pecan) 열매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아르헨티나	피칸(Pecan) 열매	식물보호;	G/SPS/N/ CHL/690
24	칠레	직경 6mm 이상 제재목 및 원목의 수입검역요건 승인	모든 교역국	목재포장재	식물보호;	G/SPS/N/ CHL/691
25	칠레	곡류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 외알밀( <i>Triticummonococcum</i> ), 보리( <i>Chilean Hordeum</i> )	모든 교역국	식물(밀, 보리) 종자	식물보호;	G/SPS/N/ CHL/692
26	칠레	페루산 신선 블루베리의 수출기간 연장 공고(1년)	페루	식물 (블루베리)	식물보호;	G/SPS/N/ CHL/568/ Add.3
27	칠레	키위( <i>Actinidia spp.</i> ) 화분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모든 교역국	식물 (키위 화분)	식물보호;	G/SPS/N/ CHL/693
28	칠레	페루산 신선 페르시아 라임 및 키 라임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페루	식물 (라임)	식물보호;	G/SPS/N/ CHL/641/ Add.1
29	칠레	직경 6mm 이상 제재목 및 원목의 수입검역요건 채택 (8월 16일)	모든 교역국	목재포장재	식물보호;	G/SPS/N/ CHL/691/ Add.1
30	캐나다	모든 국가산 신선 고추 및 토마토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 수입허용국 목록 개정, 규제물품 추가신고사항 개정 등	모든 교역국	고추 및 토마토	식물보호;	G/SPS/N/ CAN/927/ Rev.1
31	콜롬비아	수출용 신선채소의 생산지, 수입업자 및 선과장의 등록 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농산물	식품안전;	G/SPS/N/ COL/336
32	터키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식물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토마토, 고추류, 호박) - ToLCNDV, TomMV, TASvd 등 유입 방지를 위한	모든 교역국	식물(종자)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TUR/119
33	페루	캐나다산 완두콩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시행 (10월 1일까지)	캐나다	식물(완두콩)	식물보호;	G/SPS/N/ PER/930/ Add.1
34	페루	신규 식물검역증명서 공고(21.8.23일 이후 발행)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 PER/945
35	페루	우즈베키스탄산 강낭콩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우즈베키스탄	식물(강낭콩)	식물보호;	G/SPS/N/ PER/946
36	페루	칠레산 벚나무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칠레	식물(벚나무)	식물보호;	G/SPS/N/ PER/937/ Add.1
37	필리핀	GM작물에 대한 부기사항 의무 기재 상품목록 개정 - 알팔파, 옥수수, 대두, 사과 등 다수	모든 교역국	GM작물	식품안전; 동물위생; 식물보호;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PHL/63/Add.1
38	호주	곡식수시령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검역 조치 시행 - 고위험 식물성 산물에 대한 열처리 및 MB 훈증처리	모든 교역국	병해충	식물보호;	G/SPS/N/ AUS/502/ Add.12
39	호주	곡식수시령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검역 조치 시행 - 고위험 식물성 산물 제외 목록 개정	모든 교역국	병해충	식물보호;	G/SPS/N/ AUS/502/ Add.13
40	호주	곡식수시령이의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검역 조치 시행 - 고위험 식물성 산물(25kg 이하 가공곡물)은 MB 훈증, 열처리 등 처리를 거쳐야 함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 AUS/502/ Add.14

## 식품안전 (50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대만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카탐(Cartap),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외 다수, 국내보다 강화(감, 복숭아, 양상추) *한국 수출품목: (신선)배추, 배, 사과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PKM/567/ Add.1
2	대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신선유(Milk) 및 멸균유는 개정안 목록에서 제외됨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 TPKM/570/ Add.1
3	대한민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 KOR/731
4	대한민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 영상검역 시행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KOR/732
5	대한민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총 47종) 및 개정(33종)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KOR/733
6	대한민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107종)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KOR/734
7	말레이시아	과민증(hypersensitivity) 유발성분 목록 개정 - 글루텐 포함 곡물, 갑각류, 난제품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MYS/50
8	말레이시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 Cymoxanil, Dinotefuran 등 총 5종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MYS/51
9	말레이시아	수분을 함유한 식품의 요건 개정 - 두 종류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경우, 해당 비율을 신고해야 함	모든 교역국	식품(식수)	식품안전;	G/SPS/N/ MYS/52
10	말레이시아	Codex 광천수 표준의 준수를 위한 식품규정 개정 - 중금속 최대허용기준(납, 카드뮴, 크롬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MYS/53
11	멕시코	벨기에산 꽃상추( <i>Cichorium intybus</i> var. <i>foliosum</i> )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종료 공고	벨기에	꽃상추	식품안전;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도보호;	G/SPS/N/ MEX/394/ Add.1
12	멕시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유기농 인증 마크 개정(마크, 색상패턴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유기농 제품)	식품안전;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도보호;	G/SPS/N/ MEX/396
13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국내기준 없음(바나나)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59
14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국내보다 강화(옥수수, 땅콩) *한국 수출품목: 땅콩(피넛버터 외 기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60
15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제타-사이퍼메트린(Zeta-Cypermethrin), 국내보다 강화(감귤류 등 다수의 과일, 돼지지방) *한국 수출품목: 감귤, 사과, 배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61
16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최종규칙 - 플로라솔람(Florasulam), 국내기준 없음(조사료, 사료 및 건초)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62
17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플루엔설펜(Fluensulfone), 국내기준 없음(콩, 종자) * 한국 수출품목: 콩(기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64
18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보스칼리드(Boscalid), 국내기준 없음(건조 차, 인스턴트 차) * 한국 수출품목: 녹차, 홍차 및 발효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65
19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에마멕틴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국내보다 강화(대두 종자) * 한국 수출품목: 대두(기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66
20	미국	식품첨가물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 합성 산화철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 USA/3267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21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외 다수, 국내보다 강화(심자화과 및 박과 채소류 등) * 한국 수출품목: 시금치류, 배추속채소, 감귤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USA/3268
22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국내보다 강화(괴경 및 구경 채소) * 한국 수출품목: 감자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USA/3269
23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국내보다 강화(향신채소류 등) * 한국 수출품목: 고추류 종자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USA/3270
24	바르바도스	식품안전 및 품질법 개정(안) 제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BRB/7
25	베트남	식품안전에 관한 일부 법률의 개정 및 폐지 공고 -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의 허용한도, 건강보조식품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VNM/123
26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상하기 쉬운 식품(우유, 닭고기, 계란)의 최대 보관 기간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SAU/435/Add.3
27	우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양고기(지육 및 절단육)의 등급별 기준 (프라임, 초이스, 스탠다드 등)	모든 교역국	축산물 (양고기)	식품안전;	G/SPS/N/UGA/165
28	우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돈육(지육 및 절단육)의 위생조건(세균, 대장균 등)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돈육)	식품안전;	G/SPS/N/UGA/166
29	우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건조육(수분함량, 지방, 단백질 함량)	모든 교역국	축산물 (건조육)	식품안전;	G/SPS/N/UGA/167
30	우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알코올 음료(pH, 산도, 알콜함량, 당 함량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알코올 음료)	식품안전;	G/SPS/N/UGA/168
31	우루과이	활성성분 파라콧을 함유한 제초제의 사용금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URY/61
32	우크라이나	유아용 식품의 안전요건 및 품질규격 승인 - 유아용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모든 교역국	식품 (유아용)	식품안전;	G/SPS/N/UKR/166
33	유럽연합	특정 식품의 납 최대기준 채택 - 유아용 조제분유(0.02ppm), 의약품 분말(0.02ppm) 등	모든 교역국	식품 (납 함량)	식품안전;	G/SPS/N/EU/465/Add.1
34	유럽연합	특정 식품의 카드뮴 최대기준 채택 - 과일류, 채소류 등 작물에 따라 상이	모든 교역국	식품 (카드뮴 함량)	식품안전;	G/SPS/N/EU/466/Add.1
35	유럽연합	신소재 식품 성분의 시판허가 - 알피나( <i>Mortierella alpina</i> )에서 추출한 오일	모든 교역국	신소재 식품	식품안전;	G/SPS/N/EU/500
36	유럽연합	신소재 식품의 규격 개정 - 고수( <i>Coriandrum sativum</i> )종자유	모든 교역국	신소재 식품	식품안전;	G/SPS/N/EU/501
37	유럽연합	활성물질 인독사카브(Indoxacarb)를 함유한 작물보호제의 사용금지 공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EU/502
38	칠레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조건 제정	모든 교역국	유제품	동물위생;	G/SPS/N/CHL/688
39	캐나다	식품첨가물의 사용허가 - 방부제(메틸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등) 총 3종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CAN/1280/Add.1
40	캐나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 완료 공고 - <i>Trichoderma reesei</i> 유래 리소포스포리파아제 (Lysophospholipase)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CAN/1413
41	캐나다	식품방부제의 사용 승인목록 개정 - 와인, 사이드, 페리음료에 음료방부제인 디메틸디카르보네이트(DMDC, Dimethyldecarbonate)의 사용을 허가함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CAN/1414
42	콜롬비아	미용 및 세척목적의 동물제품의 등록 및 요건 의견수렴 공고 - 수출입업자, 가공업자 등에 해당	모든 교역국	동물제품	동물위생;	G/SPS/N/COL/335
43	탄자니아	땅콩 내 아플라톡신(Aflatoxin)의 오염방지 및 저감 실행규범 제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TZA/14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44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건조육(수분함량, 지방, 단백질 함량)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ZA/142
45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땅콩( <i>Arachis hypogaea</i> L.)분말 (수분함량, 세균 기준 등)	모든 교역국	식물(땅콩)	식품안전;	G/SPS/N/ TZA/143
46	탄자니아	옥수수의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모든 교역국	식품(옥수수)	식품안전;	G/SPS/N/ TZA/146
47	태국	대마성분을 함유한 식품' 고시 발효(7월 24일)	모든 교역국	식품 (대마성분 포함)	식품안전;	G/SPS/N/ THA/390/Add.1
48	태국	식품 오염물질 고시 발효(7월 24일) - 테트라 히드로칸나비올 및 칸나비디올	모든 교역국	식품오염물질	식품안전;	G/SPS/N/ THA/391/Add.1
49	태국	파인애플 밀폐용기의 산업기준 채택(22.1.15일 발효)	모든 교역국	식품 (파인애플)	식품안전;	G/SPS/N/ THA/268/Add.1
50	홍콩	식품 유해물질 관련 규정 발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HKG/45/Add.1/ Corr.1

\* 통보문 원문 및 번역본 관련 상세내용은 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http://www.koreasp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1. 8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 동물검역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러시아	네팔	살아있는 우제류의 잠정수입금지	16/08/2021
	도미니카 공화국	살아있는 돼지, 돈육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02/08/2021
	라오스, 캄보디아	살아있는 소의 잠정수입금지	30/07/2021
	이스라엘	살아있는 면양 및 염소, 관련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30/07/2021
	토고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02/08/2021
모로코	네덜란드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30/08/2021
브라질	모든 교역국	포획조류(야생 및 관상용)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01/09/2021
아랍에미리트	슬로바키아	사육조류 및 야생조류, 초생추, 종란의 잠정수입금지 해제	02/08/2021
	아일랜드		02/08/2021
칠레	모든 교역국	우제류(소, 말, 염소, 돼지) 가족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추후결정
		상업 및 전시목적의 너구리과 및 족제비과 동물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10/08/2021
		우제류(소, 말, 염소, 돼지) 박제동물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24/08/2021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05/06/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추후결정
태국	네덜란드	살아있는 가금류 및 지육의 잠정수입금지	21/07/2021
	덴마크		20/07/2021
	독일		추후결정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태국	베트남	살아있는 가금류 및 지육의 잠정수입금지	20/07/2021
	영국		20/07/2021
	인도네시아		추후결정
	프랑스		27/07/2021
	라오스		21/07/2021
페루	호주	쇠고기(냉장, 냉동) 및 부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승인	24/07/2021
필리핀	네덜란드	사육조류 및 야생조류, 초생추, 종란의 잠정수입금지 해제	25/08/2021

## 식물검역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브라질, 인도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의 잠정수입금지 해제	19/08/2021
미국	호주	신선 감귤류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26/02/2022
에콰도르	미국	재식용 블루베리 조직배양체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11/05/2021
영국	대만, 러시아, 미국, 베트남, 북한,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한국	한국산 분재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추후결정
칠레	모든 교역국	곡류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아르헨티나	호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페루	신선 페르시아 라임 및 키 라임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24/09/2021
캐나다	모든 교역국	신선 고추 및 토마토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01/11/2021
터키	모든 교역국	토마토, 고추류, 호박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15/09/2021
페루	칠레	벚나무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11/08/2021
호주	모든 교역국	곡식수시령이의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검역조치	추후결정